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 목 차 -

■ 수출입무역 및 통관/관세

- 1 • 중국 관세세칙위원회 2023년 관세조정방안에 대한 공고 2
- 2 •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완화 이후 통관검역에 대한 공고 2
- 3 • 해관총서 RCEP실시 신규증가사항에 대한 공고 3
- 4 • 위험화학품목록(2015년판) 조정에 대한 공고 3
- 5 • 마취약과 향정신성약품 수출입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공고 3

■ 식품/약품 관리

- 6 • 농산품 품질안전법 4
- 7 • 식품관련제품 품질안전관리 잠정방법 4
- 8 • 약품경영 품질관리 규범부록 - 약품소매 배송품질관리 5
- 9 • 의료기기경영 품질관리 규범목록 - 의료기기 운송저장서비스 전문기업 품질관리 5
- 10 • 의료기기생산경영 등급별 감독관리 지도의견 6

■ 정보통신/지적재산권

- 11 • 공업과 정보화영역 데이터안전관리방법(시범시행) 6
- 12 • 일부 특허업무 취급방식 조정에 대한 통지 7
- 13 •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7
- 14 • 국가표준관리방법 8

■ 투자 및 기업활동

- 15 •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2022년판) 8
- 16 • 해관총서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2022년판)>집행에 대한 공고 9
- 17 • 해외 기관투자자 중국 채권시장투자 자금관리규정 9
- 18 • 해외기구 국내 채권발행 자금관리관련사항에 대한 통지 10
- 19 • 상업어음인수, 할인 및 재할인관리방법 10
- 20 •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11

- 시사점 11

수출입무역 및 통관/관세

1. 중국 관세세칙위원회 2023년 관세조정방안에 대한 공고

- 법령 원제 :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2023年关税调整方案的公告
- 발표/시행 : 2022년 12월 29일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212/t20221229_3861039.htm

■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일부 상품에 대해 수출입관세조정을 진행하고 <수입상품잠정세율표>, <일부 정보기술제품최우대국세율표>, <일부 냉동닭 제품 최우대국 세율조정표>, <관세쿼터제품세목세율표>, <FTA 및 우대무역배치 실시세율표>, <수출상품세율표>, <수출입세칙세목조정표> 등 7개 별첨문서를 발행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1,020개 상품(관세쿼터상품제외)에 대해 수입잠정세율 실시 △2023년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세계무역기구 가입 관세양허표 수정안”에 열거된 정보기술협정 확대제품 최혜국 세율에 대해 제8단계 인하 실시 △밀 등 8가지 상품에 대해 수출관세 쿼터를 지속 실시하며 세율은 변하지 않음. 그 중 요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등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한 쿼터세율은 지속 1%의 잠정세율을 실시 △한국 포함 FTA와 RCEP 등 우대무역협정에 근거, 19개 협정항목하의 29개 기체결국가 및 지역에서 협정세율 실시 △수출상품세율표에 의거 지속적으로 106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알루미늄과 일부 알루미늄합금의 수출관세 인상 등

2.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완화 이후 통관검역에 대한 공고

- 법령 원제 : 海关总署关于新型冠状病毒感染乙类乙管后有关事项的公告
- 발표/시행 : 2022년 12월 28일 해관총서 발표, 2023년 1월 8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761081/index.html>

■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검역법>의 규정에 코로나19를 “을류 전염병”으로 규정하여 관리체제 변경에 따라 검역 관리규정 또한 변동

- 2023년 1월 8일부터 중국 입국인원 전원의 핵산검사를 취소하고 세관에 48시간 이내의 검사결과 제출로 같음하며, 건강신고에 이상이 있거나 발열증세 등 인원에 대해서만 상황검사 후 분류조치. 또한 2023년 1월 8일부터 모든 수입콜드체인과 비콜드체인 물품 통관절차 시 그동안 화물에도 시행해오던 코로나 핵산검사 등의 조치를 일체 취소함

3. 해관총서 RCEP실시 신규증가사항에 대한 공고

- 법령 원제 : 关于《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实施新增事宜的公告
- 발표/시행 : 2022년 12월 23일 해관총서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758731/index.html>

■ RCEP규정에 따라 원산지규칙리스트 및 증서양식을 공포하고 성원국에 인도네시아 추가

- RCEP 원산지규칙 중 제품명칭과 코드를 2012년판에서 2022년판으로 업데이트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제품의 특정원산지 규칙리스트와 원산지증서양식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3년 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의 RCEP발효에 따라 <특별화물리스트>에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특별화물리스트> 별첨서류를 추가함

4. 위험화학품목록(2015년판) 조정에 대한 공고

- 법령 원제 : 调整《危险化学品目录 (2015版) 》的公告
- 발표/시행 : 2022년 11월 7일 응급관리부·공업과정보화부·공안부·생태환경부·농업농촌부·위생건강위원회·시장감독총국·철도국·민항국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mem.gov.cn/gk/zfxxgkpt/fdzdgknr/202211/t20221107_426077.shtml

■ 응급관리부를 비롯 중국 10개 부처에서 <위험화학품목록(2015년판)>을 조정함

- 금번 조정을 계기로 기존 목록의 “1674디젤오일[폐쇄형 인화점(闭杯闪点; closed cup flashpoint; 밀폐상태에서 가열하여 측정하는 방식의 인화점)≤60℃”이 인화점과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1674디젤오일”로 변경됨. 이에 따라 전에는 동 목록에서 제외되었던 발화점 60℃이상의 디젤오일 생산경영기업도 동 규정에 따라 향후에는 위험화학품기업으로 분류·관리됨

5. 마취약과 향정신성약품 수출입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공고

- 법령 원제 : 麻醉药品和精神药品进出口管理有关事宜的公告
- 발표/시행 : 2022년 12월 22일 국가약품감독국 및세관총서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nmpa.gov.cn/xxgk/fgwj/gzwj/gzwjyp/20221222172008153.html>

- 향정신성약품의 수출입은 국가약품감독국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증과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함. 수입허가증은 1년간 유효하고 해를 넘겨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출허가증은 3개월 유효하며 해를 넘겨 사용이 불가능하며, 서류상 기재된 해관을 통해서만 통관수속 진행이 가능
- 허가증은 국무원 및 국가항구관리판공실이 관리하는 “중국국제무역 단일창구 (www.singlewindow.cn)” 또는 국가약품감독국(NMPA)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증은 모두 동등한 효력이 있음. 신청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및 실명인증 필요

식품/약품 관리

6. 농산품 품질안전법

- 법령 원제 : 农产品质量安全法
- 발표/시행 : 2022년 9월 2일 전인대상무위원회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www.npc.gov.cn/npc/c30834/202209/666ec644e17d411ca0a2b1b01fb9f438.shtml>

- 기존 56조를 81조로 개정하여 농산품의 품질안전강화 내용을 보강하여 리스크관리와 표준제정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행위 처벌수위를 높임
- 주요내용 : △농가를 감독관리 범주에 포함 △농산품 품질안전표준이 강제집행표준임을 명시 △농산품 산지환경조사, 합격증 추적관리제도 등 감시측정과 평가제도 보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형사처벌규정 명시, 다만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 차원에서 비교적 약한 처벌규정을 도입

7. 식품관련제품 품질안전관리 잠정방법

- 법령 원제 : 食品相关产品质量安全监督管理暂行办法
- 발표/시행 : 2022년 10월 8일 국가시장감독총국 발표, 2023년 3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gkml.samr.gov.cn/nsjg/fqs/202209/t20220930_350531.html?affvuaSlo7F=1665306098304

- 식품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자재(포장자재, 용기, 가공설비 및 도료 등)와 제품(식품첨가제, 식용색소, 효모 등), 식품생산 가공용 화공제품(세척제, 소독제, 윤활유 등) 식품관련제품의 생산판매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명시

- 생산·판매 금지 제품 :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질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인체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불순물 또는 가짜를 섞거나, 가짜 또는 불량품을 양질의 합격품으로 둔갑한 제품 △실효, 변질된 제품 △원산지 또는 타인의 공장명, 공장주소, 품질표지를 위조도용한 제품 등
- 라벨정보 요구사항 : △제품명칭 △생산자 명칭, 주소 및 연락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관련 규정 준수 사항 △재질과 종류 △주의 및 기타사항

8. 약품경영 품질관리 규범부록 - 약품소매 배송품질관리

- 법령 원제 : 药品经营质量管理规范附录6：药品零售配送质量管理
- 발표/시행 : 2022년 11월 30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21130200516116.html>

- 약품소매 배송행위 규범강화를 목적으로, 총 22조로 구성되어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 중 약품소매과정(인터넷소매포함)과 관련된 약품배송행위의 품질관리에 적용
- 차량과 약품배송박스의 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약품포장자재, 봉인자재, 출하조건, 포장규칙, 배송요구, 반품서비스 등에 대해 규정

9. 의료기기경영 품질관리 규범목록 - 의료기기 운송저장서비스 전문기업의 품질관리

- 법령 원제 : 医疗器械经营质量管理规范附录：专门提供医疗器械运输贮存服务的企业质量管理
- 발표/시행 : 2022년 11월 1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21101154122176.html>

- 총 7장 48조로 구성되어 의료기기 운송저장 전문서비스기업의 품질관리시스템의 수립과 개선, 기구와 인원, 시설과 설비, 컴퓨터시스템, 품질책임 등 내용에 대해 규정
- 의료기기 등록(备案)인과 경영기업이 의료기기 운송 및 저장을 위탁할 경우 위탁측이 법에 따라 제품경영품질관리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의료기기 운송저장 위탁업체는 의료기기제품 품질심사, 구매, 판매, A/S 및 의료기기 리콜, 불량사건 감찰 등 역할 수행

10. 의료기기생산경영 등급별 감독관리 지도의견

- 법령 원제 : 关于加强医疗器械生产经营分级监管工作的指导意见
- 발표/시행 : 2022년 9월 9일 국가약품감독국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nmpa.gov.cn/xxgk/fgwj/gzwj/gzwjylqx/20220909171207137.html>

■ 39개 의료기기 생산중점관리품목과 6개 유형의 의료기기 경영중점감독관리품목을 규정하며, 의료기기 생산 및 경영활동을 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

- 의료기기 생산등급 : (4등급)지역사회 중점관리품목을 생산하거나 심각한 신용불량기록이 있는 기업 등 (3등급)중점관리품목 이외 제3류 의료기기 생산기업 (2등급)중점관리품목 이외 제2류 의료기기 생산기업 (1등급)리스크가 비교적 낮고 주로 제1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
- 의료기기 경영등급 : (4등급)리스크가 높은 저장운송서비스 제공기업 및 중점검사기업 (3등급)중점관리품목과 관련된 도매기업 및 전년도 신용불량 경영기업 등 (2등급)제2~3류 의료기기 경영 도매기업 및 중점관리품목의 소매기업 (1등급)2~4급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의료기기경영기업

정보통신/지적재산권

11. 공업과 정보화영역 데이터안전관리방법(시범시행)

- 법령 원제 : 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
- 발표/시행 : 2022년 12월 13일 공업과 정보화부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mit.gov.cn/zw/gk/zcwj/wjfb/tz/art/2022/art_e0f06662e37140808d43cd7735e9d9fd3.html

■ 공업산업, 전자정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인터넷산업, 통신산업, 무선전산업 등을 포괄하는 8장 42조 분량의 공업과 정보화영역 데이터 관리방법에 대한 규범

- 주요내용 : △정보관리자는 주관부서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 및 등급별로 관리하고 주요/핵심 데이터 목록을 작성해야 함 △핵심 주요데이터를 지역별 산업감독관리부서에 등록(备案)해야 함 △제3자가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전자통신업무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제3자에게 주요/핵심데이터를 간접 취득하는 경우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며, 데이터를 제공·이전·위탁 처리할 경우 안전평가 및 보호조치 시행 △중요데이터 처리자는 정기적으로 안전평가 실시 및 주관부서에 보고

12. 일부 특허업무 취급방식 조정에 대한 통지

- 법령 원제 : 关于调整部分专利业务办理方式的通知
- 발표/시행 : 2022년 12월 7일 국가지적재산권국 발표, 2023년 1월 1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cnipa.gov.cn/art/2022/12/7/art_75_180691.html

■ 특허심사업무 취급절차의 일부 변경

- **(대리기구 위탁)** 2023년 1월 11일부터 중국 내륙지역에 경상거주지 또는 영업소가 없는 홍콩·마카오·대만지역의 개인, 기업 및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조직이 단독으로 특허를 신청하거나 대표로 특허를 신청할 경우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해야 하며, 위탁하지 않을 경우 수리 불가
- **(특허행정재심 제출)** 2023년 1월 11일부터 행정재심신청서를 전자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 **(PCT 국제신청)** 중국국가단계에서 중국국가단계 진입성명 및 의견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의견진술서에는 가입항목 및 부분인용 포함여부를 명시하고, 인용이 포함될 시 중국대상 신청일의 개정, 설명서상 가입항목·부분인용의 존재여부 명시, 권리요구 별첨도면 위치 명시, 국제단계 제출인용 가입시간 기재 등 필수

13.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 법령 원제 :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 발표/시행 : 2022년 11월 25일 국가네트워크판공실·공업과 정보화부·공안부 발표, 2023년 1월 10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www.cac.gov.cn/2022-12/11/c_1672221949354811.htm

■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가상장면 등을 활용 인터넷 정보기술을 제작하는 '심층합성기술'에 대한 정의와 함께, 정보서비스(콘텐츠) 제공자의 활동범위 등에 대한 규범 명시

- 심층합성기술 서비스제공자는 위법한 정보를 합성·제작할 수 없으며, 데이터 합성결과에 대해 심사, 불법·불량 정보데이터의 보완 및 관련 인터넷일지를 보존해야 함. 또한 루머방지시스템을 수립하여 허위정보의 제작, 복제, 발표, 전파 등에 대응하며 관련상황을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대중에게 정보내용의 합성상황을 제시하여 대중의 혼돈 또는 오인을 방지
- 여론주도 또는 사회동원능력을 갖춘 심층합성 서비스 제공자는 등록(备案)·변경·등록말소 수속 등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응용프로그램 등 눈에 띄는 위치에 등록번호를 표시하고 공시정보 링크를 제공해야 함

14. 국가표준관리방법

- 법령 원제 : 国家标准管理办法
- 발표/시행 : 2022년 9월 9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발표, 2023년 3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gkml.samr.gov.cn/nsjg/fgs/202209/t20220919_350113.html

■ 1990년 8월 최초 제정 이후 국가표준관리 강화를 위해 2022년 개정되어, 국가표준의 제정절차 및 감독관리업무 등에 대해 명시

- 주요내용 : △표준제정을 확대하고 국제표준의 채택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화 표준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을 강조, △돌발긴급수요에 대응하는 국가표준의 제정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관련기술 개발중인 항목에 대해 국가표준화 지도성 기술문건으로 제정할 수 있음

투자 및 기업활동

15.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2022년판)

- 법령 원제 :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2022年版)
- 발표/시행 : 2022년 10월 26일 발개위·상무부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ndrc.gov.cn/xxgk/zcfb/fzggwl/202210/t20221028_1339662.html?code=&state=123

■ 2020년판 대비 총 목록수 1,474개로 239개 조항이 증가하였으며, 167개 조항이 개정됨. 주로 첨단제조업·현대화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서부·동북지역 투자장려를 위한 목록 확대

- **(첨단제조업 투자 확대)** 삼림 바이오매스 자원 신기술·신제품의 개발·생산 및 응용, 의료제조업 관련 자재개발 및 생산, 첨단기술 비철금속 및 관련제품생산, 고성능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반도체 원료인 웨이퍼 위에 부리는 감광액) 개발 및 생산, 글로우 방전 질량분석기(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ry; 도체, 반도체, 부도체의 고체 및 분체시료를 전처리 없이 직접 분석하는 기기) 개발 및 생산 등 목록의 추가·개정
- **(현대화서비스 투자 확대)** 저탄소 친환경 그린 에너지절감 및 절수의 선진시스템 통합기술과 서비스, 전문디자인서비스, 직업대학 및 학교, 인력자원서비스, 청정생산평가인증 및 심사 등 목록
- **(중서부·동북지역 투자 확대)** △산시(陕西), 라오닝(辽宁), 안후이(安徽), 닝샤(宁夏)지역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제품 및 부품생산, 부착부품 가공생산, 기능성 환경보호 재생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의 R&D 및 생산, LED자재 및 OLED자재 제조 등 추가 △네이멍구(内蒙古), 장시(江西), 구이저우(贵州), 헤이룽장(黑龙江)지역 : 클린기술제품의 개발과 이용, 화원화회초급 및 정밀가공, 리치셀레늄 농산품의

재배, 흑토지보호이용기술의 연구개발혁신 등 추가 △티벳(西藏), 신장(新疆), 윈난(云南), 칭하이(青海)지역 : 상업프랜차이즈, 사막경제산업, 크로스보더물류, 생태관광자원보호성 개발분야 등이 목록에 추가됨

16. 해관총서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2022년판)>집행에 대한 공고

- 법령 원제 : 海关总署关于执行《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2年版）》有关事项的公告
- 발표/시행 : 2022년 12월 6일 해관총서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gdfs.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719795/index.html>

■ 2023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2022년판)>에 수록된 산업의 경우 총투자액 범위 이내 자체사용설비와 관련 기술 및 부대 부품의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 <외상투자항목의 면세하지 않는 수입상품목록>과 <수입 시 면세하지 않는 중대한 기술장비와 제품목록>에 포함되는 상품은 예외
-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심사·비준·등록(备案)을 받은 외상투자항목이 <2022년판목록>에 포함될 경우 관련주관부서로부터 <항목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면세 가능.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심사·비준·등록을 받은 외상투자항목이 <2020년판목록>에 포함될 경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항목확인서>를 받으면 면세 가능
- <2020년판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2년판목록>에 포함된 건설 중 외상투자항목은 세금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지만, 수입설비가 이미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하지 않음

17. 해외 기관투자자 중국 채권시장투자 자금관리규정

- 법령 원제 : 境外机构投资者投资中国债券市场资金管理规定
- 발표/시행 : 2022년 11월 10일 인민은행·국가외환관리국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4715989/index.html>

■ 금융시장 활성화 제고 및 외국투자자의 중국채권시장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리규정의 제·개정

- 주요내용 : △해외기관투자자가 결산대리인 이외의 제3의 금융기구를 통해 외환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허가됨 △외환 카운터거래의 상대방 수량제한 취소 △송금 및 입금의 화폐종류를 통일하여 해외기관투자자의 투자자금 송금편의 향상 △위탁인 또는 결산대리인(상업은행)을 통해 투자한 주권류 기관투자자는 은행에서 등록해야 함

18. 해외기구 국내 채권발행 자금관리관련사항에 대한 통지

- 법령 원제 : 关于境外机构境内发行债券资金管理有关事宜的通知
- 발표/시행 : 2022년 10월 30일 인민은행·국가외환관리국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www.pbc.gov.cn/zhengwugongkai/4081330/4406346/4693545/4726665/index.html>

■ 해외기구의 국내채권발행자금에 대한 자금등록, 계좌개설, 자금환전 및 사용 등 관리규정 통일

- 주요내용 : △해외기구는 국내 주거래기구에 관련 절차를 대행하도록 위탁하며 ‘해외기구 국내채권발행 기본정보등기표’ 및 ‘해외기구 국내 채권발행 모집자금 정보등록표’를 작성하고 국가외환관리국은 이를 등록관리함 △채권의 분할 발행 시 차례로 발행정보를 신고하여, 첫 발행시 개설등록한 계좌와 동일한 채권발행전용계좌를 후속발행 시 사용가능하게 함 △해외기구와 국내금융기구간 환율리스크관리를 위한 외환파생상품거래 가능 △채권발행을 통해 모집한 자금을 국내에 유보하거나 해외에 송금하여 사용할 수 있음

19. 상업어음인수, 할인 및 재할인관리방법

- 법령 원제 : 商业汇票承兑、贴现与再贴现管理办法
- 발표/시행 : 2022년 11월 11일 인민은행·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www.pbc.gov.cn/tiaofasi/144941/144957/4715325/index.html>

■ 어음성격 및 분류를 명확히 하고 정보공시 및 신용제약체제 등 측면의 규정 개정

- 주요내용 : (상업어음의 분류를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 종이 및 전자형식의 은행인수어음, 재무회사의 인수어음, 상업인수어음 (정보공시 신규규정) 공시원칙, 공시루트, 공시에 대한 감독 및 기타 공시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업어음 인수인에 대해 신용평가요구 신설 (리스크통제 신설) 은행인수어음과 재무회사 인수어음의 최고인수잔액은 해당 인수인 총자산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은행인수어음과 재무회사인수어음의 보증금잔액은 해당 인수인 예금규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동 규정은 시행까지 1년간의 과도기를 부여함 (어음중개업무 주체 한정) 허가증을 취득한 금융기구에 제한되며 팩토링회사, 정보서비스회사, 금융과학기술회사는 어음중개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불법할인 금지) 어음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어음을 무단 할인하는 경우 법률책임 및 처벌조치

20.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 법령 원제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발표/시행 : 2022년 10월 30일 전인대상무위원회 발표, 2023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www.npc.gov.cn/npc/c30834/202210/d80092ae46b24946b30b3a880c2f2be5.shtml>

- 취업 성차별에 대해 명확히 금지하고 사용자가 결혼, 임신, 출산휴가, 포유기 등 상황으로 여직원의 진급, 진직, 전문기술직함과 직무의 평가를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함
- 취업 성차별 금지 : 사용자는 채용과정에서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남성우선채용 △개인 기본정보 외에 여성취직자의 혼인상황 추가문의 △임신테스트를 채용 신체검사항목에 포함 △결혼, 출산을 제한하거나 결혼, 출산상황을 채용조건으로 제한 △기타 성별을 이유로 여성의 채용을 거부하는 행위. 또한 노동계약 체결 시 여직원의 특수보호조항 및 남녀평등 등 여직원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성희롱 방지 : 사용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성희롱 금지규정 제정 △책임기구와 인원 명시 △예방 및 교육활동 전개 △필요한 안전보호조치 신고루트 마련 △적시 분쟁처리 및 당사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피해여성의 법에 따른 권리수호를 협조하고 필요시 피해여성에게 심리치료 제공

시 사 점

- 금년도 중국은 외국인투자 및 개방조치 확대, RCEP 확대 시행 및 관세세칙위의 연례 관세 조정, 국민 건강생활에 필요한 농산품 및 의약품·기기 등의 품질관리, 날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대한 각종 신규·개정 법령을 발표함
- (수출입무역) 매년 시행되는 정기적인 관세조정 이외에 RCEP 시행에 따른 적용범위 조정 및 최근 발표된 제로코로나 완화정책에 따른 통관 완화 내용 등이 포함되었음. 그러나 위험화학품 및 마취/향정신성약품 등 취급주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관리강화 규정을 명시한 점이 눈에 띈. 특히 위험화학품 관리규정 변경에 따라 기존에는 위험화학품 취급 기업에 해당하지 않던 우리 기업들이 위험화학품 기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식약품)** 농산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생활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제품군의 품질관리에 정부가 직접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돋보임. 전년도인 22년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수출식품 생산기업 해외등록>,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 등 식품/화장품류의 '생산'에 관한 법규가 다수 발표되었던 반면, 금년도 새로 발표된 법규에는 의료기기 및 약품류의 '운송, 배송, 저장'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는 중국이 최근 제로코로나로의 전환과 함께 의약품 유통배송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향후 해당 제품군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기업들의 법적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정보통신/지재권)** 정보데이터 산업분야에서는 안전관리 및 허위정보 대응에 대한 규범 등이 강화되어 라이브방송 등 인터넷 정보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경우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허의 경우 중국 대륙에 사무소가 없는 기관은 반드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해야만 특허심사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점을 주의해야 하며, 한편 중국은 국가표준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 편 제정시간 단축 등 산업별 표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향후 각 산업별 표준을 숙지하여 기업활동에 활용해야 할 것임
- (투자 및 기업활동)** 투자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해오던 첨단산업,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산업 장려를 위한 외상투자산업 목록 확대가 이루어짐. 또한 어음 및 채권 등 분야에서 자금관리규정을 통일하고 정보공시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외 기관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춤. 이는 중국의 투자 활성화와 내수경제 촉진을 위한 조치로 해석됨
- 우리 기업들은 2023년 새로이 시행되는 중국의 각종 경제무역 관련법령에 각별히 주의관심을 갖고,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대중국 무역 및 시장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